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4.(화) 12:00 / 배포 2026. 11. 24.(화) 08:30
<11. 25.(수) 조간>

`26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

- 헬스장, 요가업, 필라테스업 2,500개 중 최종 2,489개가 이용 요금·환불 기준 공개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**체력단련장**(이하 '헬스장')과 **요가업 및 필라테스업*** 분야 **총 2,500개 사업자**를 대상으로 2026년도 체육시설업 **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**에 대한 **실태조사를 실시****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「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」 개정('25.11.)으로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, 금년도 조사부터 해당 업종을 조사 대상에 포함

** 전문 조사업체(㈜메트릭스알앤씨)에 위탁하여 '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

이번 실태조사는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전문적 체력단련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**헬스장 1천 3백 개***와 **요가업 4백 개** 및 **필라테스업 8백 개****** 사업장을 방문하여 **가격 등 표시의무***** **준수 여부를 점검**하고,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**제도를 이행**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* '24년 말 기준 전국 헬스장 15,548개 중 약 8%에 해당(문화체육관광부, 「2025 전국 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 현황」)

** '25년 기준 전국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 20,523개 중 약 6%에 해당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)

*** 종합체육시설, 수영장, 체력단련장, 체육교습업 및 요가업, 필라테스업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, 환불기준,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(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표시광고법') 제4조 제1항에 따른 「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」)

특히 **작년 11월**에 가격 등 표시의무가 **새로이 추가된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**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에게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물(리플렛)을 배포하는 등 **교육·홍보 활동을 병행**하였다.

실태조사 결과 최초 현장 방문 시에는 상당 수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미준수하고 있었으나, 세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계도를 거쳐 **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총 2,500개 사업자 중 2,489개**(헬스장1,292개, 요가업399개, 필라테스업798개) 업체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**이행하게** 하였고, **11개**(헬스장 8개, 요가업1개, 필라테스업2개) 업체가 **최종 미이행**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< 헬스장,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의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>

구분 \ 지역*		서울	인천	경기	대전 세종 충남/북	대구 경북	부산 울산 경남	광주 전남/북	강원 제주	합계
조사 업체	헬스장	333	71	329	127	110	182	101	47	**1,300**
	요가업	97	19	112	36	31	53	28	24	**400**
	필라테스업	195	37	224	72	63	105	56	48	**800**
미이행 업체	헬스장	3	-	1	-	4	-	-	-	**8**
	요가업	-	-	1	-	-	-	-	-	**1**
	필라테스업	2	-	-	-	-	-	-	-	**2**

*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하며, 해당 지역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업체 선정

공정위는 **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** 서비스 내용과 이용 요금, 환불 기준,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의 표시 의무를 **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**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**과태료 부과*** 등 **후속 조치를 검토**할 예정이다.

*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(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1호)

아울러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들의 **주요 미이행 사유*를 고려**하여 **관련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**하여 **사업자 대상 홍보·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****도 검토할 예정이다.

* 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, 표준 서식 부족, 필수 표시항목 누락 등

** 지자체 사업장 점검 시 가격 등 표시의무 이행 여부 병행 확인, 신규 사업자 등록 시 홍보물 배포, 사업장 등록 관련 서식 상단에 안내 문구 배치 등

앞으로도 공정위는 **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**

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태호 (044-200-4405)
		담당자	조사관	서도현 (044-200-441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